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문화체육관광부 (게임콘텐츠산업과)
연 월 일	2021. 8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규정 신설(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 신설, 2020.12.8.)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직권 등급분류 결정·취소 절차 신설(안 제9조의7)
- 나.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등급분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항 신설(안 제9조의8)
- 다.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신설(안 제9조의9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1. 8. . ~ 2021. 8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21조의10에 따라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내용수정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의7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7(시스템등급분류결과와 직권재분류결정 절차 등) ①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이나 취소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교부하고,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②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른 통보 시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등급분류시스템을 이용한 등급분류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때에는 등급분류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.

제9조의8(자료제출 요구)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및 등급

분류기관이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
2. 전용게임기기·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 당해 게임기기·장치 사진(전·후·좌·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)
3. 실행 가능한 게임물 파일
4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
5.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및 게임설명서
6. 그 밖에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인정하는 자료

제9조의9(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)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신청자의 성명, 주소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·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)를 등록할 것
2. 등급분류업무 관련 담당자의 이름,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 등을 등급분류시스템에 등록할 것
3. 법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 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성실히 입력할 것
4.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2(게임물의 내용수정)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(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,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9조의2(게임물의 내용수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법 제21조의10에 따라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내용수정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.</u>
②·③ (생략) <신설>	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9조의7(시스템등급분류결과의 직권재분류결정 절차 등) ①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

<신 설>

으로 등급분류 결정이나 취소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교부하고,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②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른 통보 시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시스템 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등급분류시스템을 이용한 등급분류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때에는 등급분류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.

제9조의8(자료제출 요구)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

<신 설>

2. 전용게임기기·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 당해 게임기기·장치 사진(전·후·좌·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)

3. 실행 가능한 게임물 파일

4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

5.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및 게임설명서

6. 그 밖에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인정하는 자료

제9조의9(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)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신청자의 성명, 주소(법인인 경우 법인

	<u>의 명칭·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 우편주소 등)를 등록할 것</u> <u>2. 등급분류업무 관련 담당자의 이름, 연락처 (전화번호, 전자 우편주소) 등을 등급분류시스 템에 등록할 것</u> <u>3. 법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 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성실히 입력할 것</u> <u>4.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입력하지 않을 것</u> <u>5.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 보(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한다)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할 것</u>
--	---